

## 環境對策 機構의 擴充·強化



具 然 昌

〈경희大 法科大學長·法博〉

최근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들에  
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交道問題와 汚染問題  
라고 하며, 외국인의 65%가 水道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의 環境汚染狀況이 限界  
를 넘어섰다는 評價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  
다. 이미 10여년전인 1972년에 AID用役으로  
서울의 環境狀況을 조사·분석했던 美國의  
스미소니언研究所가 서울을 「世界에서 가장 汚  
染된 都市」라고 친절한 바 있었다. 더구나 최근  
의 서울의 環境條件은 健康保護에 필요한 최소한  
의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環境保全法上의 環境  
基準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저한 汚染狀況下에서는 政府가  
80年代의 舉國的인 大事業으로 推進中인 88올  
림픽을 차질없이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걱  
정스러워진다. 현재의 環境對策이 그대로 지속  
된다면 88올림픽은 자칫하면 汚染韓國을 세계  
에 널리 알리는 契機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가 최근 88올림픽과 관  
련하여 보다 效率的인 環境對策을 강구하기 위  
하여 環境對策機構의 擴充·強化에 관한 論議를  
하고 있음은 晚時之嘆은 있으나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여름 L.A.올림픽에 즈음하여 政府는 서

울의 88올림픽에 對備하여 관현 사항을 調查·  
研究케 하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직원을 상당수  
파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環境廳의 관  
계관을 그 명단에서 빠뜨려 環境廳當局을 실망  
시키고, 環境問題에 관심을 가진 國民들의 적잖은  
批判을 받았던 일이 기억난다. 이와같은 政  
府의 조치는 서울의 環境狀況을 제대로 인식하  
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올림픽 開催에 環境狀況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認識  
이 없었다는 한 證據라 할 것이다.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國  
務總理 소속하에 環境保全委員會를 설치하여 보  
다 높은 次元에서 종합적인 環境對策을 강구하  
려고 하는 점은 特記할 만한 일이다. 環境保全  
委員會는 環境保全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環境保全法 제 10조에서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 機構이다.

環境保全法 施行令에 의하면 環境保全委員會  
는 經濟企劃院長官이 그 委員長, 그리고 保健社  
會部長官이 그 副委員長이 되고, 內務部長官,  
財務部長官, 農水產部長官, 建設部長官, 環境廳  
長등 14人의 委員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그  
러나 1978年 7月 環境保全法이 시행된 이래  
환경保全委員會가 開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이 없다. 政府의 環境問題에 대한 基本姿勢나

委員會의 성격으로 보아 자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環境問題에 보다 적극적으로對處하기 위한 이번의 政府構想은 環境保全法上의 環境保全委員會를 좀더 強化하고 活性化 시키기 위하여 國務總理를 委員長 그리고 環境廳長을 幹事長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環境政策의 決定은 同委員會에서 하고 그 執行은 環境廳으로 하여 금 담당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러나 이 政府의 構想에 근거한 環境保全委員會가 기대하는 바대로 環境對策의 效率화와 積極化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에서, 筆者는 위 環境保全委員會의 活性化方案에 反對한다.

무엇보다도 1979年 5月 故 朴大統領의 環境行政專擔의 機構設置에 관한 指示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기구설치에 대한 論議가 활발했었던 때를 想起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政府組織體系內에서의 機構類型으로서 대표적인 세 가지案이 舉論되었었다. ① 保健社會部長官 소속하의 環境廳, ② 國務總理 소속하의 環境處, ③ 독립된 環境部의 設置案이 그것이었다. 결국 保社部의 案이었던 環境廳案으로 낙착되어, 1980년 1월 保社部의 外廳으로서 環境廳의 發足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當時 環境法學界나 環境專門家들의 支配的인 見解는 環境處案이었다. 外廳으로서의 環境廳의 設置는 廳長이 國務會議에 참석할 수 없어 環境基本政策의 결정에 그 意思를反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豊算權이나 人事權이 制限되어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環境對策行政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長期的인 眼目에서 소규모이나마 環境處를 설치하고 그 長官으로 하여금 國務委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없이 強調된 바 있었다.

얼마 안되어 環境廳體制下에서의 環境對策行政에서 처음부터 우려해 왔었던 諸問題點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끄럽지 않은 環境에서 88올림픽을 開催할 수 있도록 함에는 環境廳體制로서는 적잖은 어려움에 당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는 環境對策機構上의 결합에서 오는 環境行政의 非效率性을 補完해 보려는 취지에서 汎政府的인 機構로서 環境保全委員會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各部處長官으로 구성된 部處間의 機構가 國内外를 막론하고 효율적인 機能을 발휘해 본例가 없으며, 머잖아 곧 또다시 對策機構의 改編問題가 舉論될 것이 예측된다. 委員會의 성질상 계속적인 活動이 어렵고, 자칫하면 行政府의 최고책임자인 大統領의 一貫性 없는指示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此際에 環境對策機構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1979년 環境廳設置時에 주저하여 未解決의 문제로 남겨두었던 것을 이번 機會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環境廳을 環境處로 승격시켜 國務總理 소속하에 두고 環境處長官을 國務委員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環境對策을, 國務會議 아닌 다른 機構에서가 아니라, 國務會議 그 자체에서 審議決定 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民平均所得이 2000弗을 넘어서고 있는 水準으로 미루어 볼 때, 비단 88올림픽을前提하지 않고서도 環境對策行政機構로서 環境處를 설치할 時點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環境保全法上의 아직까지 利用도 적이 없는 對策手段을 活用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環境保全法 제7조의 特別對策地域制度의 活性화가 요청된다. 88올림픽에 對

備하여 서울을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하고 적절한 特別綜合對策을 樹立·施行하면 局部의인 시급한 問題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環境對策은 88올림픽을 위한 것 이상

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各道에 설치된 環境測定管理事務所의 人的·物的 設備를 대폭 擴充하여야 할 것이다. \*

## 해 외 화제

다시 들을 수 있다면...



4 살 때 심한 뇌막염으로 청력을 잃은 윙스포드 대학교의 제스카 리스양(21)이 청력 회복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제시카의 수술이 성공한다면 런던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앤드류 모리슨씨는 인간의 몸에 다수의 전극을 이식한 최초의 의사가 된다. 조기검사에서 제시카는 5개의 백금전극을

이식한 귀로 음악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각각 다른 음높이에 반응하도록 고안된 전극들은 목에 장치된 연결점속통을 통하여 가슴의 살갗 안에 넣은 수신기에 연결되어 있다. 다음단계의 실험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英國대사관 提共〉